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등 지원〉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57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2201157)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등 지원(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정부 의견	9
1) 국토교통부	9
2) 환경부	10
3) 기획재정부	10
4) 산업통상자원부	10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220115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등 지원(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이용·교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 -----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1. ~ 5. (현행과 같음)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현행	개정안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u><신설></u>	5의2.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이륜자동차의 구매, 이용 및 교체</u>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¹⁾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 즉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성장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현행법 제23조제1호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사업, 특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인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자동차를 구매·이용 또는 교체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이는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과다 배출과 소음 유발 등 환경피해 우려를 고려하여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소음을 저감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륜자동차 및 배달산업 현황 >

이륜자동차(전기이륜차) (’23년 12월 기준)	배달종사자 (’22년 기준)	
	전업 종사자	부업 종사자
약 221만대	약 23만명	약 40만명
약 7.1만대	총 약 63만명(추정)	

자료 :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조사, ’22년 국토부 배달업 실태조사

출처 : 국토교통부

다만, 이미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 따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적 국고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²⁾에 근거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하면 전기이륜차 규모·유형·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최대 140~300만원³⁾)을 지원하고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3)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 무공해차 보급사업(전기이륜자동차) 예산현황 >

(단위: 대, 억원)

		2021	2022	2023	합 계	평균
전기이륜자동차 등록대수	신규	18,949	16,568	9,435	44,952	14,984
	누적	50,069	63,091	72,526	-	-
전기이륜자동차 보급대수	전체(a)	16,858	14,892	8,182	39,932	13,310
	배달차량(b)	843	501	47	1,391	464
		5.0%	3.4%	0.6%	3.5%	3.5%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액(국비)		211	160	75	446	149

자료: 환경부

출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7) 비용추계서 (국회 예산정책처)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개정안에 따른 지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또한 환경부의 보조금사업 대상이 되므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배정된 전체 전기이륜차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배달 목적 사용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달 목적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10%)하도록 하고 있음.⁴⁾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	-----	-----	-----	-----	-----

※ 자료: 환경부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4) 환경부의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배달 목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달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시 전기이륜차에 대한 환경부 보조사업(3년 평균 약 149억원 국비 보조) 외에 추가적인 국고 지원이 발생할 것인바,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1억 2,000만원(연평균 2억 2,400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유지) 확인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대, 백만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용 전기이륜자동차 보조금 추가지급 (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원대상(a)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1,400
지원단가(b)	0.16	0.16	0.16	0.16	0.16	-	0.16
추가재정소요(axb)	224	224	224	224	224	1,120	224
국비	112	112	112	112	112	560	112
지방비	112	112	112	112	112	560	112

주: 1. 최근 3년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적 및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계기간 중 매년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1,400대에 대해 1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소화물배송대행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안 제23조제5호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⁵⁾ 중 전기이륜자동차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구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⁶⁾한 자동차로, 전기이륜자동차는 고시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수용 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수용 시 안 제23조제5호의2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사용되는”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전기이륜차의 ‘구매·이용·교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인 전기이륜차의 ‘이용·교체’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전기이륜차의 ‘구매’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정부 의견

1) 국토교통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 중으로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 근거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체계 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참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3-93호, 2023. 5. 11., 일부개정] 제4조

2) 환경부

현재 시행 중인 전기이륜차 구매보조사업에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최소 10% 이상 별도 배정하고 있고, 예산 중복·국민 혼란 등이 우려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함.

3) 기획재정부

타 부처(환경부) 사업과 중복되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함.

4)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80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니로 플러스, EV6 기본형 2WD, EV6 기본형 4WD, EV6 향속형 2WD, EV6 향속형 4WD, EV6 GT, 더 뉴 EV6, EV9 4WD, EV9 2WD, EV9 GT-line, 레이 EV, EV3 스탠다드 2WD, EV3 롱레인지 2WD

2. 르노코리아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 xDrive 50(에너지소비효율 3.7km/kWh 이상인 차종에 한정), i7 eDrive50, i7 xDrive60, iX1 xDrive3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i5 eDrive40, i5 M60 xDrive, MINI Cooper SE 전기자동차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코나 일렉트릭 빌트인캠,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N-Line, 아이오닉5 향속형 2WD, 아이오닉5 향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아이오닉5 N, 더 뉴 아이오닉5 2WD, 더 뉴 아이오닉5 4WD, 더 뉴 아이오닉5 N Line, 아이오닉6 기본형 RWD, 아이오닉6 향속형 RWD, 아이오닉6 향속형 AWD, G80 Electrified, GV60, GV70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3 RWD, Y RWD,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S AWD, S Plaid, X AWD, X Plaid 전기자동차

8.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니고C, 다니고C2, 다니고R, 다니고R2, e-TOVI

10. 기아 봉고III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왕바디, 봉고III EV 저장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와이드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장차, 봉고III EV 하이 내장차, 봉고III EV 로우 내장차, 봉고III EV 냉동차, 봉고III EV 저장형 냉동차, 봉고III EV 미달이차, 봉고III EV 양문형 미달이 탑차, 봉고III EV 로우미달이차, 봉고III EV 턴인형 파워게이트

11.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 현대자동차 포터III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I 일렉트릭

- 하이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저상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웍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ST1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4. 스텔란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PEUGEOT e208, PEUGEOT e2008, DS3 CROSSBACK E-TENSE, DS3 E-TENSE, 쥘 어벤저 전기자동차
 15. 케이모빌리티 코란도 e-motion, 토레스 EVX 2WD, 토레스 EVX VAN, 코란도 EV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0. 세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SE 1인승 밴형, CEVO-C 전기자동차
 21. 마이브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350, EQB300 4MATIC, EQE300, EQE350 4MATIC, EQS450 4MATIC, EQE350 4MATIC SUV, EQE 350+, EQE500 4MATIC SUV 전기자동차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25. 케이모빌리티커머셜 SMART T1.0 전기트럭
 26. Lexus UX300e, RZ450e 전기자동차
 27. 비바모빌리티 비바 전기자동차, 브라보 전기트럭
 28. 볼보 C40 Recharge Twin, XC40 Recharge Twin 전기자동차
 29. 폴스타 Polestar2 Long Range Single Motor, Polestar2 Long Range Dual Motor, Polestar2 Standard Range Single Motor 전기자동차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 3세대 2밴, MASADA 4밴, MASADA 3세대 4밴, MASADA 픽업, MASADA QQ 2밴 전기자동차
 31. Audi Q4 Sportback e-tron40, Q4 Sportback 40 e-tron, Q4 e-tron40, Q4 40 e-tron 전기자동차
 32.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이티4밴, 이티밴 프로, 이티4밴 프로, 이티밴 미니, 이티4밴 미니
 33. 폭스바겐 ID.4 Pro
 34. 오텍 오텍봉고III EV 냉동탑차
 35. GS글로벌 T4K, T4K 냉동탑차
 36. 이엔플러스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테라밴키즈11, 테라밴
 38. 에스에스라이트 켈라 피이백, 켈라
 39. 모빌리티네트웍스 SE-A2밴
 40.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포터)
 41.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Lyriq
 42. 피닉스코리아 썬라이즈 T01
 43. 한국상용트럭 한국상용1톤롱바디EV트럭
 44. 센트로에이케이 E-CV1
 45. 파츠몰에이투지 SW40
 46. 이브이앤솔루션 STEGO-Z